

■ 장계초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[별표 1]

학생으로부터 분리·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(제12조 관련)

요건	분리기간	분리장소	분리방법
1 (고시)제11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및 위험한 장난감	수업 시간	교실 지정 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회차 : 주의 실시 · 2회차 :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· 3회차 :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· 수업 종료 후 : 즉시 되돌려줌 <p>※ 1교시 동안이 아닌 하루를 기준으로 함.</p>
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- 흉기, 라이터, 레이저빔 기기 등	3일	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·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<p>※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하고, 분리 물품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</p> <p>※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</p>
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- 술, 담배, 마약류 등			
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- 고가의 휴대폰, 고가·사치성 장신구(귀걸이, 반지), 음란미디어, 도색잡지 등 - 학교생활규정 제 10조			

※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제11조(주의)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.

※ 한 학생이 요건 1의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 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가정과 연계하여 교육한다.

■ 장계초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[별표 2]

학생 분리장소·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(제16조 관련)

생활지도	요건	분리장소(시간)	절차 및 유의점	학습지원
1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	수업 중 돌아다니기, 장난 잡담, 소음, 소란 등으로 교육활동 및 안정된 학교생활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	교실 내 다른 좌석		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
2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	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	교실 내 지정된 위치	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	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
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	가 ①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하거나,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	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(수업 시간 내 일부)	주의를 준 후 실시,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	성찰하는 글쓰기 학습자율과제
	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'가'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	지정 장소 [교무실, 교장실, 자치실 등] (정규 수업 종료 시까지 또는 충분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시)	교사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학교의 장 책임하에 관리자가 지정 장소로 이동 및 지도 (단, 관리자 부재 시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 분리 및 지도)	
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	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	교실 등 (점심시간 내 20분 내외)	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(20분) 보장	학습자율과제
	나 ① 3호 '나'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, 교육활동 침해, 선도위원회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	지정 장소 [교무실, 교장실, 방송실 등] (60분 이내)	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	성찰하는 글쓰기 학습자율과제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 시간에 늦는 경우를 지각으로 정한다. -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(단,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) -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.(지정장소 책임자는 교무실은 교감, 교장실은 교장이다.) - 3호, 4호 시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이를 알린다. - (보호자 인계) 고시 제12조제7항 :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,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. - (학교폭력 관련 분리) 고시 제12조제6항과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가해관련학생은 피해관련학생의 반대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과 분리 			
유의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,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(시설, 위험도구 등) 등을 확인 - 학칙으로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 -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함 			